

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운영 규정

기획위원회 회의통과 : 2021. 3. 11.

교무위원회 회의통과 : 2021. 3. 18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과 「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」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공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본 규정은 본 대학의 사회복지학과, 일반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, 특수대학원의 사회복지대학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)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조항에 따라 학생이 향후 관련 실습기관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·기술·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기관, 지역사회,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
2.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(지침),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
3. 기관의 사회복지실천(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)에 대한 직·간접적인 경험
4.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
5.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,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
6.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,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,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

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학교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로 구성된다. 사회복지실습세미나 교과목은 2020년 입학생부터 필수로 한다.

③ 대학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,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.

제4조(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교과목 운영)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교과목은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한다.

② 하나의 실습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30명 이내여야 하며, 30명 이상일 때 분반한다.

③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교과목은 실습기간 중 혹은 실습이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)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자는 기관실습 개시일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, 사전교육 시간은 기관실습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기관 실습 중 실습생의 문제로 현장실습을 이어갈

수 없을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, 실습기관 기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실습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습생의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, 중도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의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.

③ 실습생 개인의 질병, 사고, 사회복지기관 폐쇄, 폐업, 감염병 등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과정 실습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복지 기관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원활한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유사한 기관으로 이전 조치한다. 다만 이전할 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습을 종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습생에게 기 이수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실습시간 160시간에서 감면할 수 있다. 단, 수강 중인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.

제6조(기관실습 운영 기준 등) ① 기관실습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
2.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진행한다.
 - 가.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일 것
 - 나.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
 - 다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
 - 1)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
 - 2)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
3.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이다.
- ②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(前)학기 방학중 또는 개설된 학기중에 160시간을 실시한다. 1학기는 전년도 12월초~당해연도 6월말까지, 2학기는 6월초~12월말까지 실시한다.(평생교육기관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진행)
-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,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.
- ④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 및 공휴일 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
- ⑤ 실습기관과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의 목적·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실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 및 인정 절차)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3학점으로 한다.

② 성적은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여한다. 실습기관은 실습이 종료된 후 담당교수에게 실습생의 실습평가서를 송부한다.

제8조(지원 및 선발) ① 사회복지실습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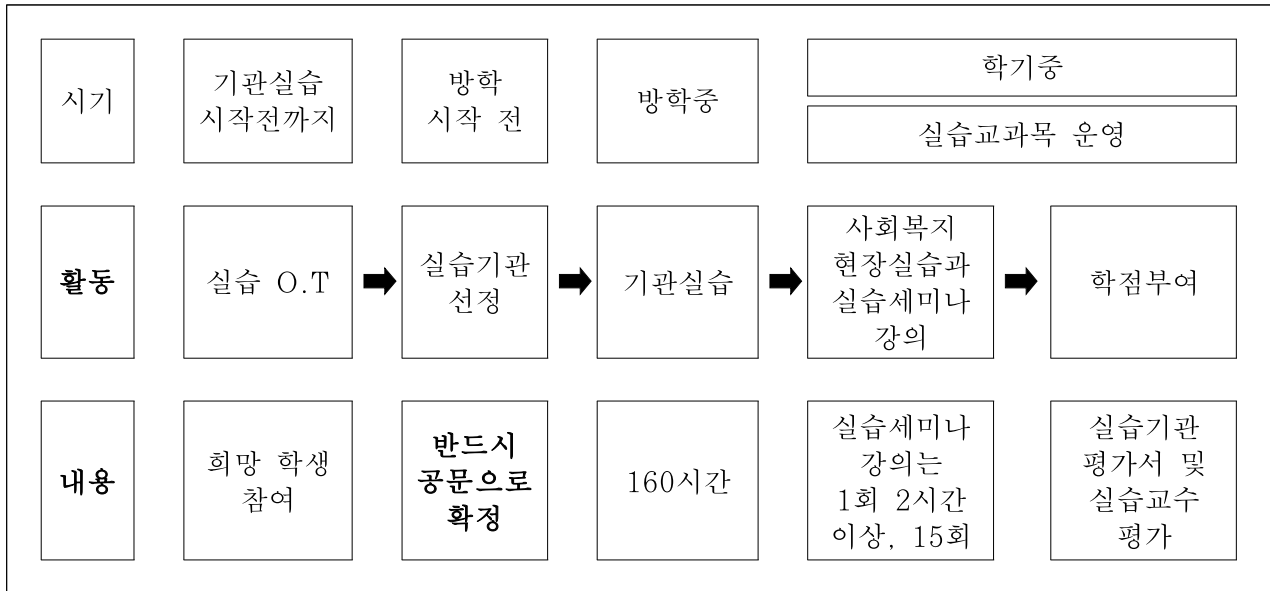
1. 학과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자격에 합당한 자
2.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자격에 합당한 자
-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를 학부(과)장
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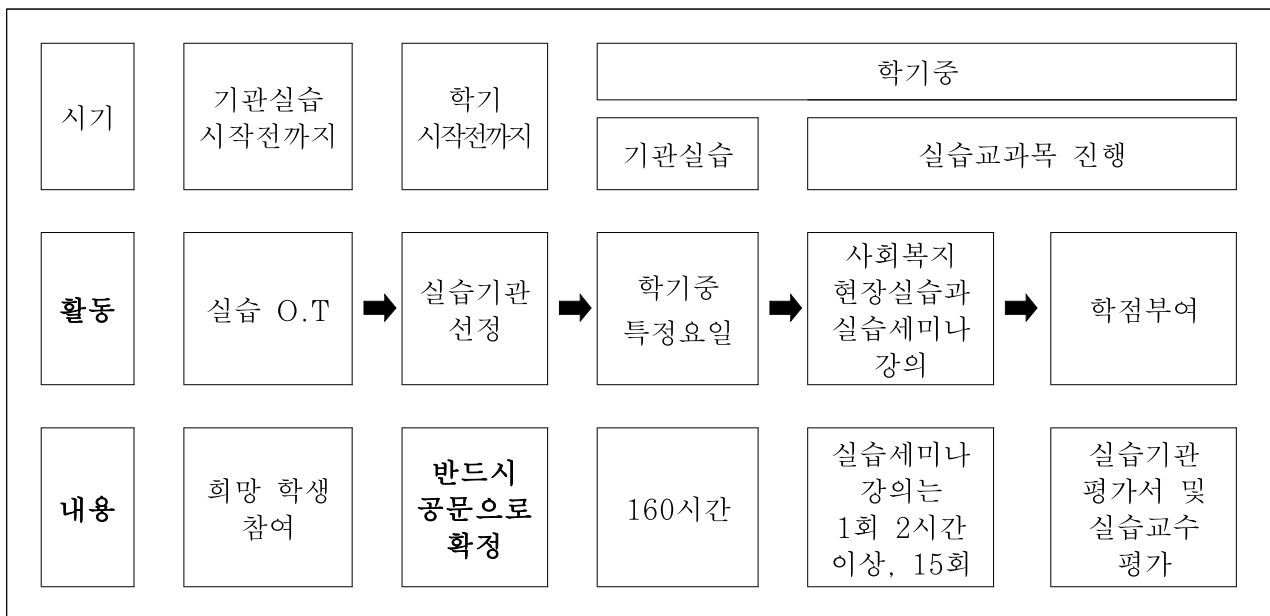
제9조(등록)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대상자는 해당 학기 등록 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실습진행절차) 구체적인 실습진행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학 중 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

2. 학기 중 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내규는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